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안내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F-1-5 비자' 발급 대상 및 요건, 제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 자격

-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3. 초청 대상(피초청인)

-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초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녀 양육지원)
 -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 다만, ‘형자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4. 초청 횟수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자녀 양육지원)
 -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없음
 -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초청 횟수 제한없음

5. 초청 인원

-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 ①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②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그리고 피초청인에게 △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1년씩 체류기간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자녀 양육지원)
 -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8. 제출 서류

○ 'F-1-5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재외공관의 장(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시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①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㉔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

▶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 증명서류

㉕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 자녀의 재학증명서

㉖ (추가) 초청 사유가 '중증 질환·장애' 지원인 경우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㉑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초청인의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㉒ 그 밖의 제출서류는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와 동일(다만,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비취업서약서는 외국인등록 시에만 제출)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중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F-1-5), 신원보증서,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통합신청서와 비취업서약서 서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민원서식)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관련 Q&A

1. 입국절차, 체류기간, 초청대상 등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 입국 절차 】

-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중증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 앞으로는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 기간 】

-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초청 자격 】

- 지금까지는 초청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이 없어 실무상 한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초청 대상 】

-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 여성혈족(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이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자녀(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으로 조정됩니다.

【 초청 횟수 】

- 지금까지는 초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이라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입국절차가 변경(자격변경→사증발급)된 이유는?

-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생략)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 그간 본국가족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단기비자(무사증 포함) 발급이 제한되면서**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본국가족을 초청하려는 결혼이민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재외공관에서 장기비자에 해당하는 ‘F-1-5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국내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보다 간이한 방식(체류자격 변경이 아닌 체류기간 연장)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류기간을 조정하고, 초청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 그간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이 4년10개월씩 국내 체류를 반복(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본국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입소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본국가족 초청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 동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류기간 상한이 조정되고 초청 횟수가 제한되지만, 체류허가 요건인 자녀의 연령 기준은 상향되었고(7세가 되는 해의 3월말→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을 초청하는 이유는?

-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피초청인’ 신분입니다. 결혼이민자 본인 또한 피초청인인 상황에서 다른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거나(한국국적 또는 영주자격 취득), 부득이한 사정(한부모 가족)이 있으면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아닌지?

- ‘F-1-5 비자’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 ‘국내 가족 관계 증명서류’,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 밖에 추가되는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중 ‘초청장’과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그리고 ‘그 밖에 추가되는 서류’ 중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F-1-5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초청장’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F-1-5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외공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는 초청인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서류이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되므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자녀의 재학증명서’는 취학연령인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초청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비자발급 전 자녀의 재학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였다면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F-1-5 비자’ 발급 시행 전(제도 변경 전) 이미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F-1-5 비자’ 발급 시행 이후(제도 변경 이후)라도,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이후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초청 횟수에 과거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도 포함되는지?

- 과거('F-1-5 비자' 발급 시행 전)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초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F-1-5 비자' 시행 후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예외적 사유(입국 후 결혼이민자 임신 등)가 발생하여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초청 횟수에 포함됩니다.

8. 본국가족이 불법취업 시 받게 될 불이익은?

- 본국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취업할 경우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 아울러 초청인 또한 향후 일정기간 'F-1-5 비자' 발급목적의 본국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9.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이미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 재외공관에서의 'F-1-5 비자' 발급 시행 전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이미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변경 전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자녀가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또는 변경된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3년, 자녀 만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 '체류 기간' 요건을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 例 :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체류허가 시에는 자녀가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만 체류)